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선박안전법」 제8조(정기검사)를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증가산금 부과 알림 문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, 반송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및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9일

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

1. 공 고 명: 「선박안전법」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증가산금 부과 알림 공시송달

2. 공고기간: 2026. 6. 9.(화) ~ 2026. 6. 26.(금)

3. 공고내용

【 법령 위반사실 및 과태료 부과 내역 】

당사자	처분 원인	법적 근거	처분 내용	납부 기한
주동신개발	정기검사 기간* 위반 * 2024. 8. 3. ~ 12. 1. (94일)	「선박안전법」 제89조제2항제1호	2,340,000원 (과태료)	2026. 6. 26. (이전 납부 기한 2026. 5. 29.)
	과태료 미납	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	70,200원 (가산금)	
	과태료 미납	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2항	28,080원 (증가산금)	
총 합 계			2,438,280원	

4 기타사항

- 과태료 납부를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(☎051-609-6547)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

-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증가산금 부과 알림 문서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 안전과로 문의 바랍니다.